

# 광주광역시 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0. 12. 8.

나. 회부일자 : 2000. 12.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0. 12. 29)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자 : 사회복지과장 이 현 숙)

### 가.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함 (안 제6조)
-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7조)
-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 화 순)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그러나 조례안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3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5호에 “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사회복지관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중 중립성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6조 4호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음.
-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 1호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은 2000. 10. 1일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11조 제1항 2·3·4·5호의 규정은 위·수탁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 후 협약서 상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되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사항 : 없음**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 출 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6조)
-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7조)
-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u>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u></li> <li>4. <u>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u> (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li> <li>5. <u>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u></li> </ol>	<p>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    &lt;삭제&gt;</li> <li>    &lt;삭제&gt;</li> <li>    &lt;삭제&gt;</li> </ol>
<p>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략)</li> <li>② (생략)</li> <li>1. <u>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u></li> <li>2. (생략)</li> <li>3. (생략)</li> </ol>	<p>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li>1.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u></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u>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u></li> <li>2. <u>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u></li> <li>3. <u>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u></li> <li>4. <u>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u></li> <li>5.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u></li> </ol> <p>② (생략)</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u>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29일

제 출 자 : 김용희 의원 외 3인

## □ 수정사유

-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정하여 가결함.

## □ 주요골자

- 안 제6조 제4호 “사회복지과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한다.
- 안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은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6조 제4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은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p> <p>1. (생략)</p> <p>2. (생략)</p> <p>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4.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p> <p>5. 기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4.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p> <p>5.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p> <p>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② (생략)</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은 취소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